

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1월 8일

나. 발 의 자: 김영길, 김낙관, 김민성, 김영태, 김원섭, 김정도,
김춘남, 박교상, 박세채, 이정희, 허민근 의원(11명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월 9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월 17일

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영 길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
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난립을 제한하여
정주여건 개선 및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로 인한 각종
사회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
기여하고자 함.

- 또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본 조례안 내용 중 별표 3 ‘바’ 항목이 누락되어 의결·공포된 바 이를 정정하고자 해당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(안 제22조4항)
 - 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[별표1의2]제2호 가목(3)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, 높이,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음
- 별표3 제2호 바목 추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6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등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발 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, 제270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안에서 누락된 [별표3]의 ‘바’ 목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-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에 26개의 자원순환시설이 등록되는 등 관내 자원순환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원순환시설의 허가기준 마련으로 자원순환시설의 난립 방지를 통해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나,
- 다만, 별표28의 ‘사’ 행(도로 및 철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)의 500미터 기준은 향후 자원순환 시설의 도입이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기에 허가 기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